[별지 제21호서식]<개정 1996.1.16>

문서번호 (☎)

시행일자

수신 발신 [인]

제목 고용명령서 (제 호)
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업체(기관)에 대하여 아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 동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용의무자	업체명(기관명)		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취업보호대상자	대상구분		보훈번호	
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유공자와관계		전화번호	
	주소			
	학력		자격면허	
	전공		직종	

붙임 고용통보서(서식) 1부 끝.

※ 유의사항 :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고용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18183-00311일 210㎜×297㎜
94. 5. 31승인 인쇄용지(2급)60g/㎡